

## «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안내 »

### ❖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
- ◆ 5인이상 중소기업등\*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**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** 월 80만원, 최장 1년간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

### ❖ 지원대상

- ◆ 기업 조건
  -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  - ※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 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

#### 5인 미만 예외 기업

①성장유망업종 ②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③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④신·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⑤청년창업기업 ⑥미래유망기업 ⑦지역주력산업 ⑧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

- ◆ 청년 조건
  -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(만15세~34세)  
(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)

#### (특례) 실업기간 연속 6개월 미만의 취업애로청년

①6개월 이상 실업 ②고졸 이하 학력 ③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④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보호종료 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⑦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
### ❖ 근로조건

- ◆ ①정규직 입사(2022.01.01. ~ 2022.12.31.) ②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③최저임금 이상

### ❖ 사업신청 (<https://www.work.go.kr/youthjob>)

- ① 기업 신청 → ②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→ ③ 청년채용 및 명단통보 → ④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→ ⑤ 고용유지 및 지원금 신청

### ❖ 지원금 신청

- ◆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(최소고용유지기간) 이후 신청 가능
  - ※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

### ❖ 문의처

(사)중소기업기술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(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)

☎ 055-295-2360, 261-2360, 283-2360

« 기타 상세 내용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(클릭 지침 참조)

<https://www.gninnobiz.or.kr/info7> (중소기업기술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홈페이지)

<https://www.moel.go.kr/news/notice/noticeList.do> (고용노동부 홈페이지)